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

#### 1. 근거

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」제3조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.

#### 2. 사유

ㅇ 제9대 전반기 원구성에 따른 본회의장 의석배정

### 3. 협의사항: 본회의장 의석배정

#### 4. 의석배정(안)

- ㅇ 의장석에서 보아 우측부터 비례대표 및 지역선거구 순서로 배정
- ㅇ 비례대표, 초선의원, 재선의원, 3선의원 순으로 뒤로 배정
- 같은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내에서는 의원 성명의 가, 나, 다 순으로 배정

## ※ 본회의장 의석배치도: 붙임

# 본회의장 의석배치도

신 종 갑 의원최 은 하 의원(아 선거구)3선(아 선거구)2선

백 남 환 의원채 우 진 의원(이 선거구)2선(마 선거구)2선

권 영 숙 의원 홍 지 광 의원 (다 선거구)2선 (사 선거구)초선

차 해 영 의원 안 미 자 의원 (바 선거구)초선(바 선거구)초선

이 한 동 의원 오옥자 의원 (마 선거구)초선(라 선거구)초선 남 해 석 의원 강 동 오 의원 (라 선거구)초선(다 선거구)초선

한 선 미 의원 김 승 수 의원 (나 선거구)초선(나 선거구)초선

이 상 원 의원 고 병 준 의원 (가 선거구)초선(가 선거구)초선 장 정 희 의원 권 인 순 의원 (비례대표)초선(비례대표)초선 도시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
기획재정국장 관광일자리국장 복지교육국장
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**구 청 장** 

의 장

※ 의석배정기준근거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」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.